

2021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1년 4월 29일(목요일) 14:00 ~ 15:10

○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회의실

○ 회순

1. 개회 2. 위원장 개회 선언 3. 안건상정 4. 폐회

○ 참석자 : 양병우, 양규혁, 김남수, 정용채, 주상현, 박성수, 황인호, 최옥채, 김지광, 이민규 위원

○ 불참자 : 조재영, 안문석, 김용우, 정재안, 김민성 위원

○ 상정안건

- 2020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

- 2021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간 사 :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
(이경환) 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안건은 제1안건 「2020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 제2안
건 「2021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인사말씀 및 신규위원 소개

(양병우)

위원장 : 오늘 위원회 소집 안건에 대해서는 2가지입니다. 2020년 회계결산, 2021년 1
(양병우) 회 추경예산안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15분 중 총 10분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성원보고 드리고 개회를 선
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첫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안 안건인 「2020회계연
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마 미리 사전에 배부를 메일로 해드렸고 그리고 실제 아마 재무과 관계
담당자 분들이 찾아뵙고 일일이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내용 자체도 광범위하고 자체 전체 기수들을 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에 대
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인 김명숙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0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에 대해
(김명숙) 여 설명함.

재무과장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서 재무보
(김명숙) 고서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배부된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하얀책인데요. 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명회계법인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정명회계법인의 담당 회계사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정명회계법인: 재무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함.

(회계사)

위원장 :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아마 사전설명을 듣고 우
(양병우) 리 정명회계법인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워낙 분량이 방대하고 내용 자체가
항목 간에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 원 : 방금 감사관련 해가지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감사하는 중에 지적된 사항이 전혀 없었
(최옥채) 나요?

정명회계법인: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지적 사항은 늘상 있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회계감사

(회계사) 라는 것이 어떤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기 보다는 그 재무제표가 작성기
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이 되느냐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항상 작
성하면서 이렇게 돼야 한다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들한 늘상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공통된 작성기준에 따
라서 부합해서 재무제표가 최종적으로 산출되도록 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것이 회계법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말씀드리겠
습니다.

위원장 : 우리 정명회계법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최옥채의원님 이야기는 회계감사가 기록
(양병우) 의 정확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회계 흐름상으로 봤을 때 특별히
특이사항이 있었느냐? 그걸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정명회계법인: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재무제표에 작성 부분에 포커를 놓고 업무를 진행하지만
(회계사) 물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재정상태표에는 현금도 있고 여러 가지 부채도 있
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현금쪽 부분에서 유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결과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현금의 차이가 있다
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
니다.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는
(양병우)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동의여부를 거수로 찬반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대해서 찬성을 거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
음에 반대를 묻고 기권을 하는데 순서를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반대하는 위원부터
먼저 묻는 것이 편의상 좋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1안건 전북대학교 2020회계연도
대학회계 결산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위원들 : (거수 없음)

위원장 : 네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혹시 기권 있으십니까?

(양병우)

위원들 : (거수 없음)

위원장 : 네 그러면 대략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결과를 말

(양병우) 씌드리면 찬성10표, 반대0표, 기권0표로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안건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마찬가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하고 준비하신 김명숙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1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김명숙)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네 제안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 (양병우) 기 바랍니다. 네 최옥채 위원님

위 원 :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하는 것과 관 (최옥채) 련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옆에서 보면 단과대학이나 특수대학원 이런 데를 보면 학장이나 그 특수대학원 원장이 얼마만큼 능력껏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당초 예산 세우고 추경 때도 이런 것들도 과연 얼마만큼 하는지 아니면 예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나가는 것인지 그것에 부응이네요

재무과장 :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연초에 총장님께 단과대학에서 주요업무보고 (김명숙) 를 합니다. 본부도 하지만 단과대학, 부속기관들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단과 대학에서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대순회방문 같은 것 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사안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심사를 기획처에서 하거든요. 그 때 각 대학, 본부 이런 데에서 각 모든 것을 보내고요. 거기에 서 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요사업비에서 깎여서 운영이 어렵게 되면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예산 이 안이 짜여지게 됩니다.

위원장 : 추경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최옥채위원님 (양병우) 말씀은 본부예산은 본부에서 편성을 해서 그렇지만 단과대학 예산 같은 경 우에 실험실습비하고 일부 대학에서 요구사항이겠지요? 그 부분을 단과대학 요구사항을 웬만하면 다 된 거냐, 아니면 머가 어떻게 된 거냐 단과대학 건 은? 고 질문이신 것 같아요.

재무과장 : 대부분 이번에 단대 순회방문을 가서 보면 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 (김명숙) 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를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 원 : 시설비 말고 이번에 단과대학 반영된 것은 공통 실험실습비 제외하고는 법 (박성수) 대, 사범대, 수의대 지금 요것 말씀하시는거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선 4군데 인대요. 여기는 필수 부담금입니다. 주로 각 수업에 대한 부담금,

위 원 : 사범대는 대응 자금 이거는 안하면 안 되는 거고요. 수의대학도 인증평
(박성수) 가 그 다음 환생대는 특성화캠퍼스에 식당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
고요. 그래서 3가지는 필수자금이고 환생대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식당이 없기 때문에 특별소요로 판단을 한겁니다.

위 원 : 그 4군데만 특별히 이번에…….

(최옥채)

위 원 : 4군데만 부서운영비가 추가로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잡혔어야 하는 부분인데 반
(박성수) 영이 안 된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 네 최옥채위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양병우)

위 원 : 네 좀 더 이해가 훨씬 더 쉬워졌던 것 같습니다.

(최옥채)

위원장 : 실험실습비예산에 관해서는 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양병우) 를 설명해주신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위 원 : 네 본예산에는 전년대비 80%밖에 반영을 못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어
(박성수) 서 근데 이번에 결산결과 각 부서에서 또는 단과대학에서 코로나 등 여파로 쓰
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를 실험실습비로
증액을 하자 그렇게 정책적 결단을 총장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위원장 : 네 그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황인호 위원님

(양병우)

위 원 : 암튼 수고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교
(황인호) 수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작년에 교수회에서 협의했던 내용을 좀 질
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무처에서 지금 추경으로 되어 있는 우수강의 포상금이
4천7백만 원이 있는데 작년 가을에 이것 때문에 정말 교수님들이 3분만 모이면
니가 우수강사니까 니가 신청해라 나는 비우수강사다 또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도 굉장히 조서적이었어요. 누가 내 강의를 평가해서 우수강사로 지정했는지 어
떤 사람이 떨어졌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때 학사질의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비대면에서 시간강사님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시간강사
님들을 위해서 하자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분들하
고 동의를 했을 거예요. 학생들이 이미 다 강의평가를 하는데 또 본부에서 보직
자 몇 분이 모여가지고 상대 어떤 쌤이 우수하니까 그 사람을 상주자 그런 식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소적이고 총장님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비웃음을 많이 샀는데 보니까 올해도 또 하려나보다 그때 이것을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마무리한다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도 이걸 또
하는지 궁금하고 또 하면 어떤 교수한테 줄 건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위 원 : 네 교무처장입니다. 저도 지금 2월 달에 교무처 업무를 시작해가지고 아직 이것
(양규혁) 에 대한 작년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도 잘 모르고 있고요. 아마 하게 되면은
상당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강의

위 원 : 평가가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것은 황 위원님 말씀 그
(양규혁) 리고 작년에 있었던 그런 논의를 한번 살펴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을 하겠
습니다. 누구를 꼭 찍어서 줄 수 있는 그 우수강의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상
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들에서 이걸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요.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 원 : 지난해에 이게 학사질의도 하고 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이유 중 하나가 교수
(황인호) 님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평가를 이미 받고 있고 교수평가도 이미 연말에 항상
받고 있고, 나름대로 학회에 가면 학회에서도 받고 이중 삼중으로 지금 교수평가
를 받고 있는데 또 본부에서 교수들 줄 세우려고 이런 것을 하느냐 돈도 없다면
서 돈까지 쥐가면서 그렇게 교수님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자체를
교수님들이 이미 여러 단계로 받고 있고 거기에 인센티브까지 다 S등급이든지 B
등급이든지 하고 있는데 이걸 또 하나 이런 차원에서 교수님들이 이 사업에 대
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 때 질의도 많이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양규혁)

위원장 : 황인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대요. 저희가 재정위원이어서 학사위원
(양병우) 이 아니고 학무위원이 아니어서 그 예를 들자면 교무학사 분야에서 우수강의 포
상금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위 원 : 네

(황인호)

위원장 : 네 지금 아마 그런 의도 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무처장님이 답변
(양병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네 저도 작년에 이루어진 것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입교수
(양규혁) 채용할 때에 이력서 온 것 보면 시간강사 할 때에 수상내역이 많이 나오지 않습
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강사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전임교수가 우수강의에 대해서 수상을 받아야된다하는 것은 좀 제가 살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부분까지는 살펴 보지를 못했습니다. 해외대학교 보면
은 하고는 있는데 공정하고 누가 봐도 받을만하다 이런 경우에 수상이 되어야지
그게 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위원장 : 네 교무처장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황인호 위원님은 이 예산을
(양병우)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장님 말씀은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존
중해서 전임교원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시간강사들만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하
겠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위 원 : 아닙니다. 그걸 제가 지금 아무런 자료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확답 하기는 사실
(양규혁) 어렵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내려와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파악을 해서 한번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그니까 사업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학무회의에서 논의가 되면 되지만 지금 예산
(양병우) 재정위원회이니까 지금 황인호 위원님 말씀은 이거 예산 깎았으면 좋겠다. 그 의
도를 순화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대안으로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한다면
조건부로 이 예산은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래서 이 내용을 지금 완전히 파악못하셨다는거죠?

위 원 :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신참이라 이게 어떻게 되어있는 일인지를 자신 있게
(양규혁)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전임교수에 대한 우수강의 평가가 이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좀 논리를 붙여가지고 검토한 뒤에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조율해도 될까요? 그 사항을 다 하시고 난 뒤에
(양병우) 위원님들에게 특히 황인호 위원님에게 교수회에서 중요한 학사 질의 내
용이었고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주신대로 좀
이렇게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

위 원 : 필요하면 평가위원에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평가위원을 구성한다든지 근
(양규혁) 데 사실 제가 작년에 교수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예 그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그걸 사실은 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강의 우수 교수에 대한 사안은 외국에
서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내에서도 많은 대학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조금 설명 드리기가 그래서 좀 숙고를 해 봐야겠
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좀 보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교수회에서 심사위원
을 좀 추천받아가지고 같이 하죠. 그러면 낮지 않겠습니까?

위 원 : 그렇게 전달하고요. 저는 사실 이제 교수회 임기도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
(황인호) 행부에 그렇게 전달하고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건 강사님들은 고생하니까 당연히
더 필요한데 교수님들이 가장 그때 질의도 그랬어요. 질의도 누가 내 강의를 평
가해야 되느냐? 자격이 있느냐? 교수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S, A, B 차라리 그
걸로 줘라 이미 객관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고 학생들도 강의평가를 하니까 이미
통계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가장 높은 사람을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이었습시다. 작년에는 코멘트를 만들어서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불
신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상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얼
마나 있겠습니까? 좋은 일인데 근데 그 과정이 교수님들은 너무 여러 가지 방법
으로 평가를 받고 이걸 또 서류를 엄청 복잡하게 내야 되요. 거기에서 평가를 하
니까 이미 데이터가 다 있는데 왜 또 서류를 받느냐

위 원 : 그 부분은 몰라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서류를 받아서 서류를 낸 사람만
(양규혁) 대상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위 원 :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수강의 포상금이란 이 항목을 없앨
(주상현) 것은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교수회 측에서 논의하셨던 내용
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좀 살리시면 어떨까 하고요. 요 항목
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 황인호 위원님, 항목은 살려두고 운영에 관한 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교수회하
(양병우) 고 논의 하겠다. 이런 제안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위 원 : 네 저도 좋습니다.

(황인호)

위원장 :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항목은 살려두되 운영에 관해서는 교무처

(양병우) 단독으로 하지 말고 교수회하고 상의해서 한다든가 좀 구성원들의 공감
대를 얻어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4천7백만 원으로 교수님들에게 400
억 이상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 같아요. 돈은 하나도 안줬으
면서 우리 기분나빠가지고 400억 손해가 났다니까요. 그런 예산은 왜 편
성하냐 지금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혹시 총학
생회장님?

위 원 : 이거 교수 강의 포상금 관련해서 작년 말씀을 계속해주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김지광) 학사관리과에서 진행을 했던 사례에 학생 대표자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우수강의 포상을 하는 기준은 강의에 중점을 두어서 작년
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비대면 강의에 있어서 학생들과 교수님들 모두가 혼
란을 겪으면서 시작된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하고 겹쳐서 포상이
되는 건지 그러한 것처럼 비대면 강의를 중심으로 이번에도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강의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질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한
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위 원 : 아까 저기 황교수님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신청교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포상
(양규혁) 을 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게 학기말이야 해야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러한 것 같은데 저도 신청교수에 대해서만 그걸 평가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가긴 합니다. 저는 신청해본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방법을 다시금 생각해봐야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뤄지는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 아무래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참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그걸 전체 강의를 평가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학
생의 강의평가가 우수한 교수들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인제 심사를 하는 방법
도 있겠고요.

위 원 : 총학생회장 이야기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거나 아니면
(최옥채) 이제 계속 대면 때도 하는 거냐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위 원 :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있었고 다른 대학에도 있고 해외 대학에도 있고
(양규혁) 우수강의에 대한 포상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코로나 사태 이
전에도 이걸 있었습니까. 근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평가받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대부분 잘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가 보다 그런 정도로 생각
하고 살았지 이제 이 업무를 맡은 이상 이게 제대로 평가되게 하는 것이
제 소임 같습니다.

위 원 : 학생회장이 질의한 사항하고 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제가 본부에
(김남수) 발령받기 전에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황교수님 말씀대로 복잡한
문서들을 내라고는 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문구들을

위 원 : 제가 기획한 것을 보면 코로나 강의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를 하니까 지금까지의 (김남수) 강의하고는 다르게 뭔가 퀄리티 있는 강의 방법 이것을 제출을 하고 제출을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를 하고 냈는데 어쨌든 저보다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많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지금 교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도 우수 강의에 대한 평가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가 더 높아졌었고 올해도 이대로 가다보면 비대면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본부에 와서도 두 달 밖에 안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비대면 수업하시는 교수님들은 강의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되더라고요. 강원대 같은 경우 심한 경우에는 경고도 맞고 그랬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해서 잘 하시는 교수님들한테는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어떨까 해가지고 이런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황교수님 말씀하시는거나 교수회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으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을 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양병우)

위 원 : 자료 준비해주시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애쓰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인 (주상현) 대요. 저는 입학처에 있다 보니까 사무국의 제지출금, 등록금 반환금이 1억 정도 추정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정말 저는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정말 끝까지 남아서 다녔으면 좋겠는데 1억 정도이게 매년 평균치가 되나요?

재무과장 : 지금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액을 세웠는데요. 본예산에 근데 이게 올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휴학한 경우에 학생이 휴학신청을 내면 돈을 반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법 개정에 따라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 원 :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겠네요?

(주상현)

재무과장 :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예요.

(김명숙)

위원장 : 예,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 (양병우) 습니까? 어제 설명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예산이 어느 항목으로 되어있는지 출처를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 외국인들 특히 드래곤 프로젝트로 대학원생을 지도하거나 외국인들을 많이 지도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 네 그 국제협력처에 부서운영비 1억 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김명숙) 요.

위원장 : 맨 마지막예요? 부서운영비? 이게 지금 협력처에 부서운영비로 받아서 교수님들 (양병우) 에게 인센티브가 되나요?

재무과장 : 이거는 이제 국제협력처에서 외국인 유치에 따른 어떤 관리나 이런 계획을 수립 (김명숙) 할 겁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관련 단과대학, 학과에 예산이 갈 예정입니다.

위 원 : 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 (박성수) 업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부서 자체적으로 운영 해라 소모품성의 운영비가 아니고요.

위 원 : 교수한테 가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과에 조금 간다든지 이런 것 정도 (양규혁) 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 학과에는 지금 가고 있나요?

(양병우)

재무과장 : 국제협력처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외국인 학생 수에 따라서 부서운영비도 조 (김명숙) 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 아니 지금 요지는 머냐면요. 유치를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유치는 한 (양병우) 번이면 끝나요. 근데 그 친구가 졸업할 때까지 투자되는 지도교수의 노 려가 엄청나게 많은 말이에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배정이 좀 있 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고 학교에서 유치해가지고 그냥 교수님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체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금 있어야 되 는 거 아니냐 그 많은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위 원 : 그 관련해서 보직자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업 (박성수) 적으로 감안하는 방법들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교연비는 통 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당성은 현행법령상 불가하다 그러면은 결국은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유학생을 논문 지도할 때 식사를 할 수 있다던가 될 해준다던가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집행성 그런 것으 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요 1억 원은 우선 작지만 시작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지출이 되고 배분이 될 겁니다.

위원장 : 네 그러면 지금 이쪽이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이미 유치한 (양병우) 학생들에 대한 교수님들에 대한 관리 지원비가 되겠네요? 단과대학이나 학교로?

위 원 : 기획처장입니다. 기획처의 성과관리부가 있어서요. 교수의 업적평가를 하 (정용채) 는데 외국인 학생의 지도 점수가 있는데 최고 리미트가 있어서 교수님의 업적평가에 그것을 대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대두가 돼서 그 령다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실제적으로 교수님들의 노력을 유치보다도 실 제적으로 공학계열보다는 인문계열 이쪽이 더 문제가 심각해서 학생을 지도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특히 어떤계열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쓰는데 몇 십 페이지를 하나하나 다 지도를 해야 되는 데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어 떤 것인가를 해서 점수를 몇 점 더 주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수당성이 아 니라

위 원 : 지원을 하는 형태로라도 해드리는데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처·국장회의에 (정용채) 서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 마일리지성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사실은 (양병우) 새로운 사업을 여기 위원회에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관한 질의사항이 거의 대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 분들이 동의를 거수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전에 대해서 찬성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기로 10분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상정된 「2021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찬성10표, 반대0표, 기권0표로 본 안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기타 안전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전으로 방금 올라온 안전인 「대학회계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대학회계직 현황」에 대하여 설명함. (김명숙)

위 원 : 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요. 지난 회의 때 논란이 대학회계직 관련 규정을 왜 (박성수) 재정위원회에서 다루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정회계법상 근거를 두는 게 대학회계직이고 대학회계직의 종별, 급수, 직무 부분들은 전부다 직접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논의가 있어서 현황을 이해를 하시라고 보고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총계를 보시면 10,556,480천 원 상급비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등록금 수입 809억 원 정도에 13%입니다. 우리 대학회계직 인건비 비중이 13%고 해마다 평균 2%~3%씩 증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호봉과 임금인상율에 따라서 많게는 호봉제로 5%까지도 증액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재정전략에 있어서 경직성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한 게 임금인상율을 재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일단 재정위원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 네 지난회의 때 참석을 못한 위원님들은 조금은 이해가 안되시겠는데요. 지금 저 (양병우) 회 대학교직원 재정위원 두 분이 오늘 참석을 안 하셨는데 한분은 공무원 노조 위원장님, 다른 한분은 대학회계직 노조 부지부장님이 지난번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참석을 못하셨는데 지난 회의 때 안전이 대학회계직에 관한 규정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개정을 왜 재정위원회에서 규정개정을 하나 이거는 학무위원회에서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대학 노조 부지부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 말씀은 이것이 대학회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위원회에서 규정을 개정하고 바꾸고 하는 것이 학무위원들은 재정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학회계법상 재정위원회에서 바꾸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계직

위원장 : 인원을 더 이상 늘리지 말아야되겠다라는 것이 대학노조의 일반적인 의견인 것
(양병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조만간에 대학노조 전체 지도부가 아닌 노조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지면 좋겠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학회계직 현황을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추진 경과입니다. 기타협
의사항중에 다른 한 가지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
나 단서조항에서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
명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1회계연도 제1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은 주상현, 정재안,
김지광 위원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주상현, 최옥채, 김지광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으로 주상현 위원님, 최옥채 위원님, 김지광
(양병우) 위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양병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 사 :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
(이경환) 습니다.

  2021. 5. 6.

작성일 : 2021. 5. 6.(목)

위원장 : 양 병 우 (인) 

간 사 : 이 경 환 (인) 

기 록 자 : 김 선 응 (인) 